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7일, 김한규의원 등 27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한규 의원)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하려는 것임.

행정기관의 명칭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표현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국민의 이용 편의나 책임행정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및 「여성가족부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에 관한 사무 외에도 양성평등정책,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등을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어, 현재의 기관 명칭은 여성·가족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여지를 줄 수 있고,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명칭의 통일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명시하여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 보호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의 주관 행정기관을 분명히 하는 등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임.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고, 아동 관련 정책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어 해당 아동의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긴급복지·소아의료 지원 등과 연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유의 사회보장, 보건, 복지증진 등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통합 수행에 따른 효율성과 기능의 이관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는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외에 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가 긴밀히 연계·제공될 필요가 있고, 아동 정책 추진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정책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증가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4. 대체토론 요지

- 헌법상 ‘양성평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라는 부처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함.
- 여성가족부가 명실상부한 정책·입법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성평등의 핵심 과제인 고용 불평등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와 법률을 이관해 실질적 기능을 갖추어야 함.

또한, 이번 개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청소년 정책을 본궤도에 올리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사회 진출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성평등가족부의 사무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의 사무에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이라는 자구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